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 9. 22.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9.14. 백남환의원 외 11명
- 나. 회부일자 : 2017.9.18.
- 다. 상정일자 : 제215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17.9.22.)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송병길 의원

가. 제안이유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구조의무는 헌법상의 의무이고,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에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립·시행하여 범죄피해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함.

나. 주요내용

- 1)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2) 범죄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3) 관계기관의 협조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안 제6조)

3. 검토보고 (김건재 전문위원)

○ 조례안은 2017년9월14일 백남환 의원의 대표발의 및 11명 의원의 공동발의로 제안되었고, 2017년9월18일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마포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는 것임.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범죄피해 주민을 보호하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서울마포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해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 타 : 없음